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김주삼 조선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 탈북자, 불법체류자, 북한인권법, 정부차원, 공동협력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남대 BK21플러스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양성팀이 공동개최한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탈북자는 2017년 기준 3만 명이 넘어섰다. 탈북자의 한국입국 현상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어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숫자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 탈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이 시작된 1998년부터 북한주민의 탈북자는 연평균 1,000명 이상으로 더 증가되었다. 탈북자 발생원인은 여러 요인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경제위기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탈북자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가장 먼저 넘어간 곳은 중국이다. 탈북자들은 조선족이 밀집되고 친·인척이 있는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출신지는 북중국경지대인 함경도를 비롯한 평양,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탈북현상이 나타난다. 탈북자는 20여 년간 약간의 증감폭은 있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절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평화번영정책’ 10년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10여 년 동안 탈북자의 한국행 입국추이는 각 정권 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1,700명, 월평균 150~200명씩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해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경지대에 탈북차단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약간만 감소했을 뿐, 전체적으로 탈북자의 한국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탈북자의 한국행 20여 년간 탈북목적과 연령 및 직업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정권은 계속되는 체제를 이탈한 주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탈북자 문제는 북한인권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에서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통과시킨 이래로, 미국이 2004년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을 2005년 8월에 발의하였지만 약 10년 이상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되었다. 같은 민족문제이고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국회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북인권법조치는 국제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향후 북한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개인에 대한 공개처형, 폭행, 고문, 가혹행위, 인신매매, 유아 방치 등에 대한 인권억압과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수집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의 탈북 문제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끊임없이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현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인권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탈북자의 한국행 지속 배경

1. 북한주민의 탈북 이유

북한주민의 탈북사태가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주요 요인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중앙정부의 배급중단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에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고, 이후 남북교류, 한국정보의 유입, 자신의 미래문제에 기인한다고 하겠다(김주삼 2009, 46-52). 북한경제가 악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주요원인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경제 침체는 1990년대 소련사회주의 종주국의 붕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동맹국가였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동반 몰락으로 정치적 종주국 상실 외 동구사회주의권 경제무역파트너의 동반침체로 북한 대외무역의 치명적 손실은 북한경제를 이전 경제상황보다 더 악화되게 만드는 외부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북한정권의 ‘핵-경제정책 병진노선’도 하나의 요인이다.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지속으로 인민들의 경제생활의 낙후 지속과 지도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회주의 경제노선의 불변 즉 북한 핵-경제병진노선 투트랙 전략은 모순관계이다(국방부 2016, 18-20). 한편 북한의 탈북자 숫자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 숫자와 탈북유형 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집단탈북, 기획된 가족탈북으로 바뀌어져 왔다.

셋째, 북한정권의 중앙정부의 경제부문 기능 약화이다(이석기 2015, 1-4). 북한은 이미 북한경제상황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한 무역액은 144배 차이가 나고 남북한경제 격차는 44배,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2배 차이가 벌어지면서 남북한 경쟁은 이미 끝이 났고, 북한은 세계 최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¹⁾ 북한은 현재 북한주민경제를 통제할 중앙정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고, 시장경제 양상을 띠는 장마당이 꾸준히 증가돼 실질적인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배급제를 폐지하여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식량공급을 못했다. 북한의 배급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에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사실상의 배급제가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 2012년 김정은체제 들어와서 인민생활경제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발표에 이어 제7차 당대회를 거쳐 올해 신년사에서 ‘핵강국’과 ‘자력자강’과 ‘경제개발5개년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경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통일부 2017, 6-7).

넷째, 탈북자 증가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1)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남북경제규모44배차이,"(최종검색일: 2017.05.16).

탈북자들의 보내는 대북메시지 등 한국의 정보유입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남북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는 그동안의 폐쇄적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이 분단 이래 적대적인 한국에 대한 대남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사회에는 기존의 대북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차관형식의 대북쌀과 비료를 지원했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자치단체 간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김대중-노무현 10년간의 대북정책은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세력 간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북한주민들의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대남인식과 한국에 대한 동경 등 한국의 대북지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정권의 폭압정치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이다. 탈북자들이 탈북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경제문제를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탈북동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탈북한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과 전화하고 탈북브로커를 통한 기획탈북을 시도하여 탈북하는 기획탈북현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탈북자는 한국으로 입국한 3만 명 외에는 없을까? 탈북자 숫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10만명, 비공식적으로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불안한 신분으로 세계 각처를 떠돌고 있다는 데에 시선을 더욱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2. 탈북자 한국행 입국 추이 분석

탈북자수는 2000년부터 2016년 12월말 기준 30,212명이 입국한 상태이며, 여성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입국에서 특이한 것은 여성비율이 2002~2005년(55%~69%)를 차지했고, 2006~2016년(75%~79%)를 차지하여 여성 탈북자 비율이 월등히 남성을 앞선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통일부 2017, 294).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욕구와 문화적 가치 추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보수정권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탈북자수는 큰 틀에서 약간의 증감의 수치상 변동이 있지만, 매년 평균 약 1,700여 명이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연도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연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잠정)	계
남성	591	795	404	369	305	251	299	8,802
여성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21,410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78	30,212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71%

출처: 통일부. 2017.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p. 294.

탈북자들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한국행을 지속되고 있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탈북자 '전원수용 원칙'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김일수 2009, 93-94).

3.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의 연관성

탈북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를 기준으로 북한탈북자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사국인 북한이 가장 당면한

과제이겠지만, 현재의 탈북문제에 따른 북한인권 상황은 “6곳의 정치범 수용소, 30여개의 노동교양소와 교화소”(하대성·김진운, 2016, 138-141)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감시통제하고 탈북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형법부칙에 따라 탈북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점점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탈북자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의 상호연관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탈북자는 우선 남북분단체제에서 대한민국 헌법상에 명기된 동일한 한반도 영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자 동포들이 탈북과정과 불법체류, 강제송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대상자라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자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불법신분체류자들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공개처형, 폭행, 인신매매, 고문, 감금, 강제노역 등 개인인권유린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불법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법상 국제법을 자의적 해석함에 따라 탈북자의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북한인권에 남북한의 특수상황으로 인식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통일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북한인권법안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Ⅲ. 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

1.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인권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정권 수립 후 한반도를 사회주의체제로 적화통일하기 위해 김일성이 무모하게 6.25전쟁을 감행하여 결국 약 400만 명의 한민족을 희생시켰다. 북한은 이후 현재까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70년 이상 북한을 세습통치해 오고 있는 지구상에서 매우 보기 드문 폐쇄적이고 독재국가일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국가 중의 하나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refugee)’ 혹은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간 자국민들이 불법으로 도강하여 불법체류하기에 강제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도 이런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시키는 행태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탈북문제에 대한 동일한 현상을 놓고 유엔과 북한,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평가는 불법탈북자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과 북한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송환한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에 대한 평가는 불법탈북자들이 중국사회에 퍼지면서 치안문제와 직결되어 이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중국 내에 방치하고 이들이 한국행을 계속 선택하여 북중관계에서 틈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인권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는 국제적 비난사유가 발생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G2국가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제는 국제

사회의 책임국가로서 대국적 입장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문제를 강제송환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 티벳문제 등 견잡을 수 없는 국제문제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대중인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회부된 북한인권 상정안에 대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으로 도망가는 현상을 차단할 수 없는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13개)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5개)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표 2〉 북한주민의 자유권규약 인권침해 항목과 권리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경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식량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	-건강권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근로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참정권	
-평등권	

출처: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pp. 15-26.

2.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은 현재 “국제인권보호에 관한 중심적 문서인 ‘시민 및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오영달 2012, 203-204)에 가입한 국가이다. 북한인권문제는 과거 한국사회에서 독재정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된 국가보안법과 유신헌법의 폐해 등은 오늘날의 북한정권이 북한체제 유지 명목 하에 주민들의 인권하는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하는 반면교사적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군부체제 하의 한국사회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한 독재체제에 대한 비난과 통치방식에 대한 민주적 이행방식의 권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군사정권하 독재권력자들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치방식을 고집한 결과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등 한국국민들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이행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후진국형 독재체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사회구조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폐쇄적 국가일 수밖에 없는가? 북한체제는 3대세습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와 법·제도, 엘리트층 및 주민의식 구조면에서 몇 가지를 자연스럽고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1945년 8월 남북분단 이래 식민지 이전 조선시대의 봉건 잔재와 유교적 전통문화양식이 그대로 북한사회에 내재되어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제강점 36년의 식민지 경험의 미청산과 해방 후 소련 스탈린 사회주의제도를 교조적으로 도입하여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러한 정치체제적, 시민의식의 교육과 질서에 대한 미경험은 3대세습 기간 동안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세력과 견제기구 없이 항일빨치산 세습군부세력이 인민에 대한 사회주의인간개조와 김일성주의 중심의 우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셋째, 이러한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미경험과 정치제도면에서의 자유민주주적 방식의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경험은 국제사회와의 국제교

류 등 대외적 교류 및 개방성에 있어서도 매우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 70년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현실적으로 현재 지도부의 미래 북한체제를 위한 개혁·개방의지와 방향성에 모순관계와 비논리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체제를 떠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앰네스티와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적 권리’ 수준평가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오영달 2012, 202-203). 북한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조직이라기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비상상황체제하의 비상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지적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유린의 지속성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사안이지만, 탈북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도망쳐나오는 현상이 계속 속출하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들이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탈출하는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탈북상황은 이제 심지어 해외공관 공사와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이들을 체제정비와 체제완화가 아닌 탈북자를 불만세력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내 정치범수용소 강제수용, 법적 권한 밖의 처형, 고문, 폭행, 모욕,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범죄, 인신매매, 강제낙태, 유아방치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측면에서 인권유린행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3. 북한인권 대응사례

북한은 3대세습 추종세력과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군부세력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목표로 세운 프롤레타리아트 정권유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또한 대량탈북문제도 북한정권 지도층에 있다(김석우 2017, 1-4).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대내적 행위, 대외적 행위는 국제법상 모두 북한인권 유린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개편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정권에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 김정은체제는 이의 개선권고를 무시하여 왔다.

〈표 3〉 북한인권법(결의안)/난민지위 부여 활동사례

국가 및 기구	연도	내용	비고
미국	2004	기록센터, 기금, 기간 연장	인권법
UN	2005	ICC회부, 유엔결의	결의안
일본	2006	납치문제	인권법
UNHCR(유엔난민기구)	2010	난민지위 부여 (917명)	난민지위
UN안보리	2014	북한인권 상황 정식 안건 채택	결의안
UN총회	2014	ICC회부, 유엔안보리에 권고결의	결의안
한국	2016	인권기록센터, 인권재단 설립	인권법

출처: 저자 정리.

한국은 UN인권위원회에 2003년(불참), 2004년(기권), 2005년(기권)하였고, UN총회에서는 2005년(기권), 2006년(찬성), 2007년(기권), 2008년(찬성)을 했다(김주삼 2009, 68). 한국정부의 유엔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일관된 투표행태는 남북한의 특수적 상황을 의식한 일련의 소극적 대처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탈북문제 인식과도 연결된다(정주신 2009, 133-135).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고 미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킨 후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수집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미국 북한인권법안 통과 후 일본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일본은 북한인권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일본인 납치문제에 치중하는 등 형식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탈북자에 대해

UNHCR(유엔난민기구)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에 탈북자에 대해 총 4,9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을 국제법적으로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간주했다.²⁾

한편 북한인권문제는 2014년 12월에 이르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유엔안보리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한 것이었다.³⁾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가 유엔총회 결의문 통과된 후 북한인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적으로 주요 안건으로써 심각하게 다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국방연구원 2015, 71-82). 북한인권유린 상황이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면서 “유엔은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하였고, 미국은 공화당에서 ‘2015 대북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발의하였고”(한국국방연구원 2015, 71-72), 북한인권유린 관련 책임추구를 위한 유엔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더욱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지난 11년간 계속 국회에서 계류시키다가 2016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9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북한인권법 2016)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야당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등의 이유였으나,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북 인식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동안 한국정부가 탈북자수가 매년 연평균 1,700명씩 한국으로 입국

2) <http://www.ukorean.com/news/article> “남한이 아닌 세계를 선택한 탈북자들 어디서 뭘할까,” (최종검색일: 2017.05.15).

3)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상황’공식 안전 채택,” (최종검색일: 2017.05.15).

4)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defactor/nkhract “한국국회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통과,” (최종검색일: 2017.05.10).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것은 당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의 현상적 변화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에서 한국정치인들이 한국정치사에서 대북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는 점에서 여야 및 한국사회 역시 모두 북한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의 접근과 북한인권개선에 노력에 소홀하고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민족으로서 국제적 인권가치 존중 측면에서 국제적 비판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IV. 한국의 대응

1. 정부차원

분단체제에서 대북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선거 때마다 북한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것은 북한을 볼모로 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온 보수정권자들의 정치행태가 지속되어 왔다. 물론 원인제공에는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공포감과 전쟁, 테러, 대남국지도발 등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로 정부차원에서의 북한인권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작년에 한국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통일부 산하(북한인권기록센터) → 3개월 경과 → 법무부(이관) → 통일 후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증거 확보 순으로 추진하게 된다(북한인권법 2016).

소련의 붕괴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북한은 체제생존차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등을 통해 비대칭 전력을 통해 대남위협과 남북균형을 유지해 나가려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유엔과 미·중의

대북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행을 향한 탈북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대내체제 단속과 주민억압, 통제방식은 인권적 측면에서 그 범위와 행태가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 반인권적 등 인권유린의 표상될 정도로 위험수위가 노출되어 있다. 서울대통일연구원이 2007~2011년간 탈북한 북한주민 약 800명을 상대로 ‘지원과 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협력(80.2%)→사회문화교류(83.7%)→인도적 지원(70.3%)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유입도 한국의 북한문화유입(70%)보다 북한의 한국문화유입(80%)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김병로·최병희 2012, 129-130).

한국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분위기 속에서 진보와 보수정권들이 교차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내 탈북자문제 조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는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을 미래 한국통일의 공존협력 대상이라는 명확히 인식하고 통일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한은 국제질서와 한국 정권자들의 대북인식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이 비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예산지원과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미래 통일을 하기 위한 공존과 협력대상이라는 실체적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국민 대북인식전환 후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하고 북한인권상황을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정치인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각 정당과 계파별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문제는 우선 북한정권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정치세력들도 비판받을 부분들이 많은 문제이다. 선

거에 따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대북정책 기조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남북관계, 대북정책기조 등의 비일관된 행태를 교훈 삼아 법제화해서 정권변화와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국회에서 2016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에 그치지 말고 중국에 대해 탈북자송환금지, 난민협약 준수 등 국제법에 근거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김석우 2017, 1-4).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이 1982년에 가입하고 있는 난민조약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례와 같다(김석우 2017, 2-4).

- 난민조약 제33조(송환금지원칙, Non-refoulement):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어떤 국가도 어느 개인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정부는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독일장벽이 붕괴된 상황을 참고로 대량탈북사태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행 이후 현재의 탈북자의 한국사회 정착하기 위한 정착프로그램 예산확보가 절실하다(주성하, 2016 동아일보, A37). 정부는 탈북자들이 미래통일세대로서 남북한을 연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엔과 미국, EU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민간차원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문제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어 온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질되고 예산지원도 축소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공유해 왔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정성택의 처형과 김정남의 암살, 집단 탈북, 북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등으로 그동안 친북적 성향의 정치세력과 단체들도 이제는 대북인식의 조율과 통일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역할은 객관적 대북인식과 한반도의 미래, 통일한국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을 배제한 한반도의 미래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반도는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대립적 이념 상존을 현실로 인식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현실적 지원과 실질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존의 배타성을 배제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존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의 점진적 해소이다. 남남갈등은 이념과 세대, 빈부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갈등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사회문제이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체제와 동족상잔의 상처가 상존한 사회이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이념과 세대 및 지역민들이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셋째, 통일한국을 위한 지속적인 미래인식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위험성 홍보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적

으로 담보한 상태에서 미래통일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공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차원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기구, 국제사회단체, NGO단체와의 유기적인 결합과 지속적인 대내적, 대외적 교류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국제적 공동협력

한반도 분단체제는 국제문제이면서 민족문제이다. 한국은 이제 미래 통일한국로 나아가기 위한 비약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 북한핵문제는 한국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으로 인식된 지 오래 되었다. 특히 북핵문제는 한국적 차원과 국제적 공동협력방안으로 양분하여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안보협력과제이다. 한국은 정전체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미동맹체제를 핵심축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한미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대북안보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입장을 공고히 하고 정권교체과 관계없이 일관된 기초임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진보와 보수세력 간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안보개념과 대응개념이 유동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와 지지세력 확보를 더 구축해 나가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분단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진해나가는 미래 통일한국에 당위성 확보라는 전략적인 마스터 플랜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협력 사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탈북자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통일한국을 설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정부차원의 과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향후 100배 이상의 300만

시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탈북자를 기존의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는 한국인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세대이고 통일창출세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금과 북한인권법안 집행예산이 지금보다 더 증액시켜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현재 그들이 북에 남기고 온 가족,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세계 수 십 만의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이 감당해야만 하는 미래통일사업이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 달성은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함께 전세계에 나가있는 재외동포과의 연대와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미래통일한국을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확대개편 내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통일부에서 이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향후 국제외교적 문제, 대북문제, 탈북자 법적 문제, 탈북자 이주민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기에 이에 대한 전담부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구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고 이차적으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탈북자지원 후속 프로그램과 법안이 후속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예를 들면 ‘미래통일법안’(가칭)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예산지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 2015년에 정착지원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세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통일부 2016, 162-165). 그러나 통일관련 법안 등으로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예산이 집행과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미래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문제를 매우 민감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최빈민 국가로 분류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 모델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는 북핵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가 확보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내외적 국민여론과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세력 확보와 대외적 국제기구의 안보협력동맹을 굳건히 다져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무모하게 계속 핵실험을 하게 되면 현재 동북아안보정세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대북압박조치는 강화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들에 대한 보복차원의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구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야 한다.

V. 결론

탈북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정부의 배급체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 국경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식량난을 약 20년 넘게 해결해 주지 못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으로 집단적으로 입국하게 된 탈북자는 현재 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만 명 이외의 탈북자는 중국과 제3국 등에 훨씬 더 많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 등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각종의 직업을 구해 연명해 가고 있다.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복송되는 탈북자들은 교화소와 강제수용소, 노동단련대 등에 보내져 처형, 폭행, 고문 등의 비인간적 인권유린행위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북한 내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여 한국소식을 전파하고 브로커를

통해 금전을 송금하면서 기획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한은 탈북자는 한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한은 탈북자는 체제붕괴자라며 극형에 처해지는 비극적 분단체제에서 공존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탈북자의 국경도장을 막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국경경비대마저 뇌물을 주고받는 실정에서 북한정권의 부정부패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과거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해외공관에 나가 있는 중요 외교관과 군인, 북한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여 북한체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탈북문제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G2국가로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과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의무사항만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의 적극성과 통일여지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정부와 한국인들이 같은 한민족으로서 미래 한반도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업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차원의 한국사회의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의지 등이 부족했고 소극적이었다. 정부차원의 홍보도 매우 부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의 결과는 결국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제 외면만 할 수 없는 국제적 심판대와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국민들의 현실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독일통일은 국제적 정세변화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서독국민들의 지속적인 동독주민들에 대한 포용력은 같은 민족으로서 수십년간을 서독에서 자발적으로 동독을 지원했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반도 상황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한반도통일은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한국 모델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어느 민족도 한반도통일을 달성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북한문제에 대해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노력과 공동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일한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은 자국이익 차원에서 패권경쟁을 통해 자국실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은 한국인 자신이 탈북자문제를 우리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을 때만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협력 그리고 찬사를 받을 수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인권문제와 별도로 구별되지도 않는다.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북한인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모두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 스스로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을 때만이 눈부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김병로·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비교분석,” 『통일과 평화』. 4집 1호.
- 김석우. 2017. “대량탈북사태는 북한정권 붕괴로 직결된다,” 『외교광장』. 서울: 한국외교협회.
- 김일수. 2009.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현대 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 김주삼. 2009. “탈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전환과 대응,” 『현대탈북자 문제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 오영달. 2012. “북한인권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전: 프리마 Books.
- 이석기. 2015. “북한시장화의 실태와 한계,”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68호.
- 정주신. 2009. “노무현정권의 탈북자 정책평가,” 『현대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리마 Books.
-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 2016.
- 통일부. 2017. 『北신년사 분석』.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17.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하대성·김진운. 2016. “북한사회의 변화와 동요의 흐름,”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주성하. 2016. “탈북자 스스로 정착제도 만들면 어떨까,” 『동아일보』. (2016/10/20), A37.
<http://www.ukorean.com/news/article> “남한이 아닌 세계를 선택한 탈북자들 어디서 뭘할까”, (최종검색일: 2017/05/15).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상황’ 공식 안건 채택”, (최종검색일: 2017/05/15).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 “남북경제규모44배차이” (최종검색일: 2017/05/16).

투고일: 2017년 8월 15일 · 심사일: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1일

* 김주삼은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북한인권 실태와 해결방안』(프라마 북스 2012),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2호(2016);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제24집 4호(2016)) 등이 있다.

〈Abstract〉

Contin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Kim, Joo-Sam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Illegal immigra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government level, Joint cooperation